

경영
상식 (세무, 노무, 환경)

퇴직연금 제도 이해하기



- ▶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종류를 다양화 하고, 중소기업은 공동도입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고, 사업장 도산 등에 따른 체불('07년말 기준 2,900억), 잦은 중간정산('06년말 기준 68% 사업장), 잦은 직장이동('07년 기준 5.9년)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2중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역할을 하고자 2005.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 매년 퇴직연금은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속도로 확산되어 시행 3년차인 2008.8월말 현재 가입 근로자는 79만명, 적립금액은 4.3조원에 이르고 있다.
-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GDP수준(미국 1경 5000조원, 일본 3,000조원, 영국 2,900조원)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퇴직연금 운영과정에서 지적되었던 ① 도입절차의 복잡성, ②사업장 여건과 근로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부족 등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올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부개정형태로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 도입절차를 합리화하고 신설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현재는 동의를 필요로 함)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퇴직연금을 다양화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장의 가입을 손쉽게 하였다.

- 기존에 근로자는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제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형과 DC형 각각의 장점(안정성과 수익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수의 사용자가 협회 등 대표사용자가 설정한 DC형 표준규약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제공하는 표준 DC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규약작성 및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도입절차가 간소해지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하여 수수료 등 제도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영세사업장 등이 보다 손쉽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퇴직연금제도 비교 〉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납입		사용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종업원 공동
부담금 부담 수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연금규약을 통해 사전 확정
퇴직급여 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적립방식 수급권 보장		부분적 사외적립(수급권 불안) 사외 적립분 수급권 보장	전액사외적립 수급권 보장
세계 혜택	근로자	연금 수급시까지 과세이연	연금 수급시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사내적립 40%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적합기업 및 근로자		대기업, 국영기업 등	연봉제 도입기업, 중소기업

셋째, 실제 은퇴시점까지 충분한 노후재원으로 보전되도록 하였고, 지역인도 원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퇴직연금과 같이 제한(주택구입, 장기요양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두어 노후재원 자체의 소진을 막고자 하였다.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서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DB형 및 DC형에 이미 가입한 재직근로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자기 부담으로 충분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인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기사, 택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연예산업 종사자 등 1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개인사업자임)의 활용이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노(한국노총, 민주노총)·사(경총, 대한상의)·정(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전문가(학계 및 업계)로 구성된 퇴직연금실무위원회('07.11 ~ '08.6월, 8차), 퇴직연금 정책포럼('08.7 ~ '08.9월, 2차)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 금년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퇴직연금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재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08.8월말 현재)

1. 도입 사업장 수 기준

- 전체 5인 이상 사업장('06년 기준 504,210개)의 8.4%인 42,105개소 도입

구 분	합 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DB&DC	IRA 특례
사업장 수	42,105	8,249(19.5)	16,828(40)	366(0.9)	16,662(39.6)
500인 이상	200	512(46.5)	51(25.5)	56(28)	-
500인 미만	41,905	8,156(19.5)	16,777(40)	310(0.7)	16,662(39.8)

※ 개인퇴직계좌(IRA) 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이 DC와 유사하나 사용자의 규약 작성·신고 의무 및 교육의무가 면제됨

●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

구 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①도입사업장수	24,441	11,156	5,156	1,085	170	200
②전체사업장수	1,189,714	156,304	45,083	8,700	1,018	965
비율(①/②(%))	2	7.1	11.2	12.5	16.7	20.7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분류(305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141개)을 합한 총 446개소(08년) 중 67개소가 도입되어 도입률은 15%임

2.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 퇴직연금사업자 추산 적립금 약 4,3조원(43,09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적립금 (비율)	43,090 (100)	28,207 (65.4)	11,923 (27.7)	1,880 (4.4)	1,080 (2.5)
1개소당 평균 적립금액	1.02	3.27	0.69	0.11	-

● 업권별 적립금 현황(운용관리기관 기준)

- '08.8월 현재 총 46개소, 적립금 4,309,051백만원

구 분	계	은행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
사업자 수	46	13	12	13	8
적립금(백만원)	4,309,051	1,847,694	1,692,764	4,68,555	300,037

※ 업권별 협회에 실적 제출한 운용관리기관 기준이며, '08.8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2개소임

3. 가입자 근로자 수 기준

●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총 6,811,867명, 매월노동통계 '07년 평균)의 11.6%인 총 787,004명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비율)	787,004(100)	428,400(54.4)	295,242(37.6)	59,280(7.5)	4,082(0.5)
1개소당 평균 가입근로자 수	18.7	49.7	17.2	3.6	-

※ DB 가입자수의 경우, 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중복가입자가 포함된 수치임